

의안번호	2203626
의 퇴 인	이연희 의원
회 답 일	2024. 9. 12.
추 계 번호	24B35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지원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안전장치 ¹⁾ 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장착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4(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지원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29조의4(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지원 등)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이하 “첨단안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상세 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의 페달영상기록장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 개발 및 장착 지원 (안 제29조의4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페달영상기록장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장착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장착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페달영상기록장치의 단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페달영상기록장치의 가격은 인터넷 판매가 기준 3~50만원 선으로 여기에 장착 단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경우(빌트인 방식) 기술개발 및 설계 변경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단가를 알기 어려우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또한 제작 단계에서 장애물 등의 감지장치, 동력제어(출력제한 또는 제동력 발생 등)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단가를 알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